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4 선고 2023가단530712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지배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4. 5. 10.

판 결 선 고 2024. 5. 24.

주 문

-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/15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E 사이에 2022. 6. 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,355,186원 한도내에서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,355,1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별지1 목록 제2, 3, 4, 5, 6,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5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E 사이에 2022. 6. 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E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22. 7. 14. 접수 제10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진정화

별지